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2월 16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정재동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3) 지원대상 및 신청, 설치비용 지원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
4) 설치방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5) 심의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6) 설치 지원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7) 관리책임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
8)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서식 규정함(안 별지 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“화재안전취약주택”의 적용 범위를 포함한 용어의 뜻을 정하고, 이에 설치하는 “피난구조설비”의 설치 항목을 정의함

나)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-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사업계획,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, 기초조사 교육·홍보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

다) 지원대상 및 신청, 설치비용 지원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 ∽ 제7조)

- 3층 이상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

라) 설치방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마) 심의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바) 설치 지원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-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 관련 교육 실시와 교육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유자와 거

주자는 적극 사용 실습에 참여하도록 명시함

사) 관리책임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
아)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서식 규정함(안 별지 서식)

3) 검토 의견

○ 「소방시설법」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화·경보·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.

「소방시설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방시설”이란 소화설비, 경보설비, **피난구조설비**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

제5조(특정소방대상물)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
[별표 2] 1. 공동주택

가. 아파트등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

○ 피난구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등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구조의 예방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